전자계산소 운영 규정

재정 1998. 3. 1
개정 2006. 3. 1
개정 2012. 3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자계산소(이하 "전산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전산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
2. 대학 행정업무(학사, 일반 행정, 입시, 연구 등)의 전산업무 지원
3. 전산망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
4. 개인정보보호 관리
5. 교직원 정보화 교육 지원
6. 기타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3조 (조직 및 인원) ① 전자계산소에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.

1. 전자계산소장 1인
2. 전산팀장 1인
3. 전산직원

제4조(전자계산소장) ① 전자계산소장은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전자계산소장은 전산소를 대표하고 전산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전자계산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전산팀장) 전산팀장은 전자계산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전산 운영 및 전산망 관리에 관한 실무총괄

② 전자계산소 예산 수립

③ 중요한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

④ 전자계산소 관련 행정업무

제6조(직원) 전자계산소 운영상의 필요한 인원을 두고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행정업무(학사, 일반 행정, 연구, 입시 등)의 전산화시스템 분석 및 개발

나. 행정업무(학사, 일반 행정, 연구, 입시 등)의 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
다. 전산시스템 도입 설치 및 운영, 유지보수
라.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
마. 전산자료 관리
바. LAN 및 인터넷 등의 교내 전산망 구축 및 운영
사. 네트워크장비 도입 설치 및 운영, 유지보수
아. 행정용PC 관리
자. 교직원전산정보화교육

제7조(업무보조원) 전자계산소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학생등의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전자계산소 운영(정보보호) 위원회

제8조(위원회) ① 전자계산소 운영(정보보호)위원회는 전자계산소의 사업과 예산 등 전자계산소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개인 정보보호 및 기타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전자계산소 운영위원회와 정보보호 위원회를 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 1인
2. 위원 10 인 이내
3. 간사 1인

② 위원장은 전자계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심의사항)

1) 전자계산소의 운영 및 기획에 관한 사항
2) 전자계산소 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3)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
4) 전산장비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) 네트워크관리 및 전용회선 관리 사항
6)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
7) 그 밖의 전자계산소 운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제11조(임기)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연장 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

제 4 장 전 산 소 이 용

제13조(이용절차) ① 교직원의 시스템 사용은 원칙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.

② 전산소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산소 소정양식에 의거 소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용제한) 전산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계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 정

제15조(재정) 전산소 운영에 관한 재정은 교비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전산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전산소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제 6 장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

제18조(서비스 만족도 조사) 전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19조(서비스 평가) 만족도 조사의 결과 및 전산소 자체 현황을 기초로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.

보 칙

제20조(운영세칙) 전산소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